

##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8. 7.  
제출자 : 이천시장

### □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식품점객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시설 설치가 제한되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숙박업등의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직할하천·준용하천 등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50미터 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용되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및 고속도로에서 100미터이상, 국도·지방도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도록 함(안 제3조).
- 나. 안 제3조에서 정한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 외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숙박업등의 설치와 소규모 식품점객업, 도로변휴게소안 식품점객업의 설치 및 도예단지·휴양시설안에 설치하는 민박형 숙박업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정함(안 제4조).

##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을 해손할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합하천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저수지 등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50미터 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
4. 고속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 국도·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시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제4조 (숙박업등의 설치특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업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숙박업등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면소재지 취락지로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안에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잡종지 등에 설치하는 숙박업등의 시설
3. 도로변휴게소안에 설치하는 식품점객업(휴게음식점영업에 한한다)
4. 건축연면적 120평방미터 이내의 식품점객업(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5. 도예단지 및 휴양시설안에 설치하는 민박형 숙박업으로서 가구당 5실 이내의 숙박시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200호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